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범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전국 병원(의료원)장  
참 조 검진(원무)부서장  
제 목 「암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안내

---

1. 관련근거 : 대통령령 제27028호(2016.2.29.)
2. 「암관리법 시행령」 이 붙임과 같이 개정 · 발령하여 안내합니다.

□ 개정이유

간암 및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간암의 검진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, 자궁경부암의 검진 대상을 30세 이상의 여성에서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

붙임 : 「암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이유, 전문, 별표1 각 1부. [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 (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)에서 다운로드]. 끝.

대 한 병 원 협 회 장



---

대리 김수한 팀장 노환우 국장 류항수

시 행 : 보험 제 2016-106 ( 2016.03.02 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

전화 02-705-9254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[kimsh@kha.or.kr](mailto:kimsh@kha.or.kr)